

아산문화예술공작소(은행나무 쉼터) 등 대관(사용) 규정

1. 사용허가

- ① 아래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(재)아산문화재단(이하 재단)의 사전 대관(사용)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지하1층 도란도란 커뮤니티 룸, 뽀나게 연습실, 2층 바스락 전시실
 - 은행나무 쉼터 광장(장소 사용료 없음. 단, 전기 사용시 별도 요금 납부)
 - 은행나무 길(장소 사용료 없음)
- ② 공작소 내 시설은 재단 업무,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일자를 제외한 잔여 일에 대관(사용)하는 것으로 한다.
- ③ 아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, 행사 및 단체에 우선 대관(사용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대관(사용)허가를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일 기준 최소 3주 전까지 대관 담당자에게 대관(사용)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대관(사용)신청서 접수 후, 근무일 기준 3일 내에 대관(사용) 허가 여부를 통보하고, 통보 후 5일 이내에 대관(사용)료 선 납부가 확인되면 최종 사용 승인을 통보한다.

2. 사용허가의 제한

- ①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③ 특정(종교, 정치, 사적 영리 등) 목적의 행사
- ④ 시설 및 설비 훼손 우려가 있어 유지·관리 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사용허가의 취소 등

-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(사용) 허가

를 취소 할 수 있다.

- 본 규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
-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
- '사용허가의 제한'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재단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재단은 '사용허가의 취소 등'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사용 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4. 사용시간 및 사용료

시설명 / 구분		기준	사용료 (부가세 별도)
바스락 전시실 도란도란 커뮤니티실	전시	1일 09:00~18:00	30,000
		1일(냉난방시)	50,000
	세미나, 체험 등	3시간	15,000
		3시간(냉난방시)	25,000
뽀나게 연습실 (음향설비, 냉난방 포함)		1일 09:00~22:00	45,000
		오전 09:00~13:00	15,000
		오후 13:00~18:00	20,000
		야간 18:00~22:00	20,000
은행나무 컴퓨터 광장 (전기 사용)		3시간 이하 / 초과	10,000 / 20,000
은행나무 길			없음

* 전시 준비 및 철수에 따른 사용료는 1시간 당 5,000원이며

18:00시 이후 야간 작업 시 1시간 당 사용료 10,000원 부과

* 세미나, 공연 3시간 초과 사용 시 초과 1시간 당 5,000원 추가 적용

*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

5. 사용료의 가산 및 감면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.
 - 공휴일(토, 일요일 및 휴일)에 사용하는 경우(사용료의 20% 가산)
 -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행사의 경우(사용료의 50% 가산)
 -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행사의 경우(사용료의 100% 가산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국가 및 자치단체, 또는 아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
 -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행사
 - 비영리 지역봉사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
 - 재단이 공동 주최, 주관, 또는 후원하는 경우
(위 4개 항 / 사용료 전액 감면)
 - 아산시 소재의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
(사용료의 70% 감면)
 - 그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(사용료의 50% 감면)

6. 사용자의 설비 등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 -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
 -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시,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
- ② 재단은 시설물의 관리, 안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사용자는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즉시 원상복구

하여야 한다.

- ④ 사용자가 ②, ③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 설치 또는 원상 복구 후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, 재단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7. 사용료의 반환

- 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 - 재단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
 -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-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

8. 입장의 제한

-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-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
 -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 - 그 밖에 재단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9. 사용자 관리 책임

-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있어 각종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시설 사용 중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사용 종료 시 사용자 부담으로 종량제봉투를 준비하여 청소 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.

- ④ 사용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내 사고(각종 안전사고 및 도난, 분실 사고 등)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10.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

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및 개인은 재단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

11. 기타 사항

본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관내 타 시설의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협의, 적용한다.